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이승선*

(목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기관·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주제어: 당사자적격,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 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 명예훼손, 언론소송, 공적존재

1. 문제제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가 인격을 형성하는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의 실현수단이라고 간주하면서 민주제의 참된 모습이란 정치적 언론이 숨을 쉬는 열린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현재는 이와 같은

* girirang@chol.com

의미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¹⁾ 법원 역시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상당성이론’ 등의 법리를 도입·적용하는 한편, 최근 들어서는 공적인 사안과 공적 존재에 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국회는 1996년 ‘정간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을 권리의 성격에 맞게 ‘반론권’으로 바로잡았고 2005년에는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이하 ‘언론중재법’)을 제정하였다.²⁾ 동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의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동법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언론소송에 관한 한 가처분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법리 변화 그리고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언론중재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인가, 누가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취재대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니셜이나 익명으로 처리된 경우, 또는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되어 방송된 경우에 피해자의 ‘특정’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해당 언론사에서는 보도대상의 신원

1) 현재 1999.6.24. 선고 97헌마265. 그렇다고 언론이 보호논리에 걸맞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 세기 전,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면서 오히려 언론의 지나치고 그릇된 관심과 추적으로부터 홀로 조용히 있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 권리 개념이 생겨나 지난 백여년간 폭넓게 발전해 왔다(Warren and Brandeis, 1890; Overbeck, 2004, pp.176-183; Middleton, Lee and Chamberlin, 2005, pp.180-181). 반세기 전에는 언론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구가하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이 소수의 소유·경영진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의견과 사상의 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일명 허친스(Hutchins) 보고서가 발간되었다(언론자유위원회, 1947).

2) 제정 2005.1.27. 법률7370호

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주위에 알려진 경우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것인가 집단·기관·단체에 대한 보도로 인해 그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권리구제를 요구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혹은, 구성원에 대한 보도로 집단·기관·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인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피해의 구제를 청구하는 자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별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³⁾ ‘피해를 입은 자’ 가운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개별적 연관성’의 유무이다(조준원, 2003, 269쪽). 즉, 언론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언론보도가 원고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개별적 연관성은 소송의 유형에 따라 ‘자기관련성’ 또는 ‘당사자적격’으로 불린다. 이를테면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거론되는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와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구체함에 있어서 적합한 관계에 있어야 함을 말하며 이러한 자기관련성의 문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황도수, 1991, 539쪽; 박경, 1996a, 45-46쪽).

지난 20여년간의 반론보도청구 사건을 분석한 조준원(2003)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문제 삼아 기각한 경우가 10건, 각하된 사례

3)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973판결

4) 언론소송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지명’(특정)과 ‘개별적 연관성’으로 일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기준이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면 되지만, 일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반론보도를 허용하는 것이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재협 외, 2002, 235-238쪽).

가 2건 발견되었다. 당사자적격을 이유로 기각한 비율은 전체 기각 사례의 20.8%를 차지하였다. ‘당사자적격’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말한다.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며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수행자이고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이 소송수행권이다. 즉, 소송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존부를 확정하고 판결을 받을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고 하는데 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김용진, 2001, 138-139쪽; 한중렬, 1993, 115-117쪽). 그리고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헌법학을 비롯한 미국 법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법적 권리’ 혹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등의 여러 가지 당사자적격범리가 생성, 발전돼 왔다. 최근의 범리는 공익·공동가치 또는 환경적 가치, 사회적·정치적 이념 등의 비교적 폭 넓은 개념들을 포괄하면서 과거에는 도저히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분야에서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다.

언론소송에서도⁵⁾ 당사자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
- 5) 협의의 소송은 민사쟁송절차를 의미하지만 민사분쟁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양자를 혼동하거나 동일시하기도 한다. 민사분쟁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론보도를 이유로 언론사 취재기자 혹은 편집 책임자를 명예훼손죄(협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의한 언론소송은 민사적인 분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절차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출판금지가 처분과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금지청구신청 역시 언론소송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소송이라고 함은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절차를 일컫는 말이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사적 분쟁해결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포함하는 의미이다(김재협 외, 2002, 278-279쪽).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론소송의 개념 역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의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등의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한다(김종서, 1998; 조준원, 2003). 당사자적격의 인정범위를 좁히는 것은 시대에 역행(김형남, 1999, 333쪽)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언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확대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당사자적격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침해된 인격권 구제는 신속하고 용이해지겠지만, 다른 한편, 당사자적격을 완화하게 되면 언론보도의 자유와 상충하거나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들을 집적, 이를 분석·평가하는 작업은 언론소송을 통한 인격권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언론의 법적 책임과 면책의 범위를 예측 가능케 함으로써 언론보도의 숨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당사자적격의 개념과 법리의 전개

1) 기존문헌의 검토

당사자적격을 소송요건의 하나로 다루는 것은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가 청구의 타당성 문제와 별개로 소의 적법성 문제이기 때문이다(김용진, 2001, 138-139쪽). 그런데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즉 당사자적격을 검토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소송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언론 보도는 익명으로 처리되거나 무작위의 이니셜로 처리된 경우가 많고 단체·기관 집단의 행위에 대한 보도 역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방식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특정인이 피해구제를 청구할 경우, 즉 익명이나 이니셜로 처리했으나 불특정한 다수 혹은 특정의 사람들이 보도대상자가 자신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단체·기관 집단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그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구제를 청구할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과연 소 제기의 당사자

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지 않다. 당사자적격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을 검토한 연구물로서 김종서(1998), 조준원(2002), 유재웅(2003) 등을 들 수 있다. 김종서(1998)는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적격을 대법원 95다37278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타 언론기관의 보도를 개별적 연관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수 많은 언론매체를 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더라도 해당 보도가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준원(2002)은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동의하면서도 자칫 당사자 능력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은 반론권 폐해의 목소리를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재웅(2003)은 국가기관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대표해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 연관성 판단에 있어서 사인의 경우에는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기관은 언론의 엄격한 감시와 비판을 받는 대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당사자적격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언론보도의 피해자 문제를 언론소송 차원에서 다룬 연구로 최문기(1999), 함석천(2001a), 조준원(2003), 유일상(2003) 등을 살필 수 있다. 최문기(1999)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주체에 대하여 자연인,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리고 사자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 소송실무의 차원에서 '당사자'의 인정범위를 논한 함석천(2001a)은 법인 및 기타단체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청구, 사자의 경우로 나누어 당사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유일상(2003)은 언론보도의 피해의 의미를 언론사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거론하고 있다. 조준원(2003)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의 기각 사례를 분석하면서 당사자적격을 보다 확장할 필요

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오명권·김명섭(1998), 양경승(1996), 강현중(1996), 강경근(1994), 김종서(1995), 박용상(1991) 한위수(1993, 1996) 등의 연구는 민사상의 언론구제 차원에서 혹은 반론권제도를 폭넓게 논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적격과 관련된 판례들을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셋째, 언론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다루고 있지 있으나 당사자적격의 법리를 이해하고 이를 언론소송에 적용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문헌으로는 네 가지 범주의 연구물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당사자적격의 개념과 이론, 또 판례에 나타난 특성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유형의 연구로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통해 당사자적격 문제를 연구한 경우(김엘림·이석선, 1982; 이광필, 1984), 당사자적격의 법적 개념에 대한 연구(박형명, 1984; 양병희, 1987; 한종렬, 1993), 실체법과 소송법의 분화기를 전후로 하여 당사자적격 이론의 발전을 논의한 연구(이동률, 2004)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헌법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을 다룬 연구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자기관련성을 다룬 연구와 당사자적격을 논의한 연구(곽상진, 1980; 황도수, 1991)와 미국 헌법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을 다룬 연구(곽상진, 1981; 김홍엽, 1991; 박경, 1996) 등이 있다. 세 번째는 기관·단체·조합·제3자 혹은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다룬 연구(김인호, 2003; 곽시호, 2000; 박동섭, 1996; 신보성, 2000; 양병희, 1993; 오대성, 1995, 1993a, 1993b; 표호건, 1997) 가 있으며 그 외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을 다룬 연구(김형남, 1999; 박민영, 1997; 김민호, 1989)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에 나타난 특성은 언론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나 혹은 이를 부분적으로 다룬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적격의 정확한 개념이나 법리의 발전 양상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미뤄볼 때 언론보도의 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요구됨을 알 수 있고 이 때 개별적 연관성은 직접적, 간접적인 경우로 나눠 논의할 수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기존의 법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언론소송의 판결례에 나타난 당사자적격의 범위와 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당사자적격의 요건과 법리의 변화

당사자적격을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적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당사자적격은 근본적으로 무엇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법원이 소송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판결요구에 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판결을 요구하는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원고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는 것과 피고가 또한 소송물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때 원고와 더불어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을 이익 내지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종렬, 1993, 117쪽). 미국에서는 당사자적격을 ‘원고와 소송간의 연결고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원고적격이 있는 자’로 해석하는 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 또 당사자적격을 논의하는 것은 사인간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소송단계에서 제소자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6)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상적인 경우로서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당사자로 나서는 한 그가 당사자적격자이다. 둘째, 원고 또는 신청인이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로서 이 때는 소송수행권의 근거가 밝혀져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의한 법정소송담당과 권리자의 수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구분된다. 셋째, 선정당사자로서 이 제도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다수의 공동이해관계자들이 그 중에서 전원을 위하여 당사자자 될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 받은 자가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정자에 관한 요건은 2인 이상일 것과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고 선정에 관한 요건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할 것과 특정 소송에 관한 선정일 것 등이 요구 된다(김용진, 2004, 634-646쪽).

를 살피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김형남, 1999, 321-325쪽).

대부분의 일반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명확하다. 즉, 손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소송 또는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는 각 소송물을 전제로 하여, 해소하도록 허용되어야 할 당사자 즉 소송결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충분히 가진 자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한다(김홍엽, 1991).

그런데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인해 원고가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는지, 그러한 침해가 직접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대 행정의 작용 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문제를 어떤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어떤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별, 시기별로 이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적격의 법리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판례를 통해 생성, 발전돼 왔다.⁷⁾

첫째, 1930년대 미연방대법원은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법률상 권리’요건(legal right rest)을 제시하였고 이 요건이 점차 확립되기에 이르렀다.⁸⁾ 연방대법원은 침해된 권리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이상 정부의 행위에 의해 직접 침해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 이론은 1924년 발표된 Frankfurter 판사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연구’(A Note on Adversory Opinion) 논문에 바탕을 둔 것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자’ 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원고적격의 유무를 판단할 때 법적 이익의 요건을 요구하여 재판상 청구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권의 침해 즉, 물권침해, 계약위반, 불법행위, 제정법상의 특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당한 자에게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7) 이 부분은 이광필(1984)과 박경(1996a, 1996b)의 연구를 근간으로 김형남(1999), 박민영(1997) 등의 논의를 반영해 연구자가 요약, 정리하였음.

8) Tennessee Electric Power Co. v. TVA. 306 U.S. 140(1939)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실상 침해’(injury in fact)와 ‘이익범위’(zone of interest)의 법리인데 당사자적격의 심사기준으로 사실상의 침해가 있는가 여부와 원고에 의해 보호되려는 권익이 일정한 ‘이익의 범위’ 안에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⁹⁾ 1968년 이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법률상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당사자적격의 논의에서 ‘사실상의 침해’로 전환하여 당사자적격의 법리를 자유화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손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손해발생의 위험이 명백히 현존하고 있음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셋째,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 general) 이론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수호에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권리를 사인에게 부여하여 사적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¹⁰⁾ 1960년대 중반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일반 소비자, 환경보호단체, TV시청자 등도 사적 법무장관의 자격으로 원고적격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현대적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의 의미를 고려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광필, 1984, 189-196쪽; 박경, 1996a, 32-36쪽).

요약하자면, 당사자적격에 관한 미국의 흐름은 연방법원과 주 법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연방법원은 전통적 보통법이론인 법적권리의 구제가 사법원칙이라는 취지에서 초기에 당사자적격의 폭을 제한하였고 주법원의 경우에도 입장은 같았다. 그러나 주 정부의 역할이 연방정부보다 복잡 다양하며 직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많았던 관계로 연방법원보다 주 법원에서 당사자적격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 커졌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연방법원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연방법원은 무분별한 소송유발의 가능성 내지 권력분립의 원칙의 존중이라는 보수적 입장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주 법원은 당사자적격의 자유화가

9)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Service Organizations v Camp. 397. U.S. 150. 90 S.Ct.. 827; Barlow v Collins. 397. U.S. 159. 90. S.Ct.. 832

10)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unication 354 F.2d 508(2d Cir.1965); Cert denied, 384. U.S. 941(1966)

론의 영향이 아직도 지배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박민영, 1997, 332-333쪽).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적격이론으로 법적권리구제설, 법적보호이익구제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적법정보장설 등의 학설이 소개돼 있다. 당사자적격 기준은 전통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취해왔고 ‘사실상 이익’을 정면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이광필, 1984, 196쪽; 박민영, 1997, 333쪽). 그러나 과거처럼 ‘법률상 이익’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집착하거나 외국의 경우를 번역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꼼꼼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의 법리를 생성할 시기라고 할 것인바(김형남, 1999, 333쪽) 대법원 판례 분석에 따르면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강현호, 2001, 282-283쪽). 다만, 언론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및 자료의 수집·분석

1)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연구문제의 설정

언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즉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접 성명 또는 초상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이다. 표현 내용 중에 성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취지나 표현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사람에 대한 표현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즉, 당해 보도 내용 중 성명이나 주소 등이 직접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령, 성별, 학력, 성씨, 직업, 직장에서의 지위, 신체적 특성, 특정인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정 다수인의 시각에서 보아 관련자를 연상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다(조준원, 2003, 269쪽; 표성수, 1997, 330-331쪽; 임병국, 2002, 154쪽). 이 유형에서는 ‘특정’ 여부가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관건이 된다.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음성권 침해 등의 인격권 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소송청구자를 특정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별적 연관성이나 법익의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법인·집단·기관·단체에 대한 언론보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중재절차나 소송절차에 의해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해서 그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확고하다. 그러나 그 자체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집단의 경우에 어떠한 범위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배금자, 2002a). ‘언론중재법’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단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보도이다. 개인과 단체는 법적으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에 관한 보도에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보도가 그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또 어떤 단체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단지 특정 자연인을 지칭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대표자 개인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이광범외, 2002, 237쪽). 또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의 보도를 하면서 집단 명칭을 사용하거나 집단 중 특정 몇몇 사람만을 지칭하였을 경우 이것이 집단 구성원들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어떠한

11) 제14조 제3항, 제4항.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이 규정은 반론보도청구, 추구보도청구 등에 준용된다.

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함석천, 2001a, 72-74쪽).¹²⁾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인 비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집단의 특정 구성원들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발언으로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인에 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집단의 규모가 적은 경우나 발언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로서 특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배금자, 2002a, 93-94쪽).

셋째, 국가기관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이다. 국가기관의 경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혹은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적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 등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유재웅(2003)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당사자적격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기관이 소송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장관만이 국가를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별 국가기관의 원고 적격을 부인하고 법무부장관만이 국가를 대표해 소송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2조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중재신청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12) 이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대학의 학생들”, “○○구청 공무원들”, “○○지검 검사들” 등의 표현처럼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만을 표시하여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13) 제14조 제3항, 제4항.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이 규정은 반론보도청구, 추구보도청구 등에 준용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49-150쪽). 이에 대해 배금지는 미국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및 심지어 공법인까지도 명예훼손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국 법원의 강력한 입장이라면서(2002a, 91쪽) 정부, 공직자, 공공기관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청구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의 위축을 가져올 것(2002b)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김동민과 주동황은 국가기구 등에 의한 언론소송이 사전검열이나 비정상적인 권언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국가기구를 포함한 법인, 단체, 집단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다(유재웅, 2003, 149쪽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니셜이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명시적으로 성명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초상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서 보도하였을 경우, 법원은 소송 청구자와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 즉 소송청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법원은 특정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둘째, 집단·기관·단체에 대한 보도가 해당 집단·기관·단체 구성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반대로 구성원에 대한 보도가 집단·기관·단체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가, 즉 이들 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는가?

셋째, 국가기관에 대한 언론보도가 언론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적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이 언론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2) 자료의 수집과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집부터 제12집, 언론중재위원회의 계간 『언론중재』,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언론관련판례자료,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 언론판례자료, 대법원의 종합 법률정보사이트, 법원도서관에서 발행한 『법고을』 DVD 2005년판 등을 통해

이뤄졌다. 홈페이지와 DVD 등의 경우 ‘언론’, ‘보도’, ‘표현자유’, ‘반론’, ‘명예훼손’, ‘초상권’, ‘사생활침해’, ‘프라이버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관련 판례를 검색하였다. 1차 검색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 163건, 하급심 135건이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인 『국내언론관계판결집』과 『언론중재』의 경우 수록된 모든 판결정의 사례를 일일이 읽고 검토하여 분석대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형사재판사건과 헌법재판소 사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9건의 결정과 판례가 활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들은 선고일 및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분류되었다. 크게 개별적 연관성을 부정한 사례와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로 구분하였으며 청구의 내용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나뉘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정정보도를 포함한 사죄광고청구등 기타청구도 포함해 분류하였다. 반론보도청구사건은 39건이었으며 이중 21건은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었고 18건은 인정되었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모두 30건으로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 판결은 4건, 인정된 경우는 26건이었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경우 ‘결정’에 의해 심판한 경우는 12건, ‘판결’에 의한 심판은 27건이었다.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통해 판단을 내린 경우는 5건이었으며¹⁴⁾ 사례 모두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으나 국정홍보처 사건의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의 경우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다.¹⁵⁾

14)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사건(서울지법 2001.9.28. 2001카기10823판결), 대성교회와 박윤식이 탁명환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서울민사지법 1983.9.30. 83가합2449판결), 정보통신부가 MBC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사건(서울지법남부지원 2003.2.13. 2003카합14판결), 청와대비서실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사건(서울지법 2003.12.5. 2003카기 8206판결),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회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법 2004.5.27. 2003가합 35432판결) 등이다.

15) 서울지법 2001.9.28. 2001카기10823판결

<표 1> 개별적 연관성 부정 사례

청구	선고일 및 사건번호	원고	피고	결과	비고
반론	서울민사지법 1982.10.21. 81카36289판결	황상기	동아일보사	기각	신청인 범의침해하는 사실기사아님
반론	서울민사지법 1983.8.26. 83카17754판결	김용서	사회발전연구소	기각	원간지 '한국인' 1983.4월호
반론	서울민사지법 1984.11.30. 84카35089판결	김민규(예수교장로회 평등노회 노회장)	월간 현대종교	기각	노회장개인관련기사소속 노회피해없음
반론	서울민사지법 1985.7.27. 85카29576판결	김동렬, 이상래	중앙일보	기각	교장취임전기사, 2,3심은 언급없이 기각
반론	서울민사지법 1989.8.18. 88카62228판결	페스트브유업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기각	1988.10.21 기사
반론	청주지법 1990.7.21. 90카1874결정	한국기자협회 충청도지부		기각	한국기협의 하부조직에 불과
반론	서울민사지법 1991.4.3. 90카110595판결	이인규	중앙일보사	각하	신청인 피해없고 당시지적적극없다판단
반론	서울민사지법 1992.9.15. 92카기474판결	신현정	경향신문외7	기각	광고내용 원고의 개별적 연관성없음
반론	서울지법 1995.7.5. 95카기1885결정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일요신문	인용 기각	구정원보도가 단체피해 아니다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1995.12.14. 93카합1011결정	이호윤	이건영	각하	피신청인 적격 상실
반론	서울지법 1996.1.8. 95카기5440결정	서울성락교회	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기각	구정원보도가 단체피해 아니다
반론	서울지법 1996.5.27. 96카기2195결정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신문사	기각	정당대표와 정당개별적 연관성없음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1997.10.30. 97카합3509판결	①강수원 ②부안군	KBS	①인용 ②기각	개별적연관성없다
반론	대법원 2000.2.25. 99다12840판결 서울고법 1999.2.4. 98나47919판결 서울지법남부지원 1998.8.12. 97가합29791판결	은진송 씨 송지각하증친회	KBS	기각	직접적·간접적 연관성없다
반론	서울지법서부지원 2001.10.11. 2001카합518판결	학교법인 청강학원	한겨레신문	기각	보도내용의 직접적·간접적연관성없다
반론	서울지법 2001.9.28. 2001카기10823판결	국정홍보처	동아일보사	기각	개별적 연관성 없다 본인전판단사태
반론	서울고법 2002.7.25. 2001나67203판결 서울지법 2001.10.19. 2001카기11669판결	국정홍보처	동아일보사	기각	국정홍보처연급사건특정 인정, 미언급특정불인정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6.22. 99가합5683판결	김시22명	MBC	일부 인용	당시 대전지검소속4명특정 인정, 나머지특정불인정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10.25. 2001카합1414판결	①김청호외17인 ②강남구청	SBS	①인용 ②기각	뉴스추적, 2001.5.11. 강남구청위생과직원들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10.25. 2001카합1884판결	대한의사협회	KBS	기각	B시뉴스, 2001.4.4.
반론	대법원 2003.2.11. 2002다47914판결 서울고법 2002.7.25. 2001나71684판결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11.22. 2001카합1966판결	대한타이어공업 협동조합	MBC	기각	뉴스데스크, 2001.7.10. 직접, 간접개별적연관성 없다
손배	서울민사지법 1984.10.15. 83가단7558판결	이두석외5인	탁명환	기각	
손배	서울민사지법 1988.5.11. 87가합6175	김경애(모델)	서울광고기획 영동백회점	기각	조상권침해소송광고그림 원고특정이유
손배	대법원 2003.9.2. 2002다63558판결 서울고법 2002.10.10. 2001나42662판결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6.22. 99가합5683판결	최진규외3인(상고심) 김종철외20인(항소심) 김승철외20인(1심)	MBC외1인	인용 기각	대전지검집단성원특정 인정
손배	대법원 2004.8.16. 2002다16804판결 서울고법 2002.2.7. 2000나31320판결 서울지법 2000.6.7. 99가합88873판결	김OO외9인 서울지검 형사4부검사들	한겨레외3인	기각	이들거명부장, 부부장2명, 나머지지검사를 특정불인정 1심은인용, 2·3심은기각

<표 2> 개별적 연관성 인정 사례의 특성

청구	선고일 및 사건번호	원고	피고(인)	결과	비고
반론	서울민사지법 1983.11.25. 83카22003 판결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경회	한국복음신문사	인용	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 당사자능력인정
반론	서울고법 1987.3.18. 86나4096판결 서울민사지법 1986.9.26. 86카28755 판결	진부자	중앙일보	인용	가명사용, 다른사건개재했으나 특정인정
반론	서울민사지법 1990.7.19. 90카41568판결	김우룡, 차인태	한국기자협회	인용	K교수, 방송인C씨
반론	서울민사지법 1992.11.26. 92카기649판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서울신문사	가각	당사자능력설시, 인정, 반론청구인정없음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1993.9.6. 93카합792판결	서울신림국민학교	MBC	인용	당사자적격있다
반론	서울민사지법 1994.10.27. 94카기5509결정	진회경	현대회신문	인용	중진모델 26세 진모양
반론	제주지법 1994.6.16. 94카합27판결	(주)제주우친	제주신문	인용	직접언급없으나간접이해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1994.11.29. 94카합1797결정	송문숙	KBS	인용	음성변조등, 특정인정
반론	서울지법 1995.1.21. 94카기4881결정	오영나의10	조선일보사	인용	서울대사회대66학편 특정인정
반론	서울지법 1996.1.25. 95카기5816결정	국승룡외5인	조선일보사 세계일보사	인용	직접지명없으나 타신문보도
반론	제주지법 1996.1.25. 95카기351결정	제민일보	제주신문	인용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10.10.96카합1231판결	전종호 (하안누리교육원대표)	KBS	인용	개별적연관성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6.27. 96카합999결정	강수원(부안군수)	KBS	인용	1인중개신청, 직격있음 군수보도, 개별연관성있다
반론	대법원 1996.12.23. 95다3778판결 서울고법 1995.7.12. 95나11261판결 서울지법남부지원 1995.2.20.94카합3123판결	정현백	KBS	인용	"서울모대학정모교수" 특정...인급, 타언론 인정
반론	서울지법 1998.5.22. 97카기9241판결	중앙일보사	미디어오늘	인용	신문사와 신문지국,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2.13.2003카합14판결	정보통신부	MBC	인용	당사자인정,본안전판단사 래
반론	서울지법남부지원2003.2.13.2002카합2549판결	광연기획사	KBS	인용	방송시업자 인정경우
반론	서울지법 2003.12.5. 2003카기8206판결	청와대비서실	조선일보	인용	본안전판단개별적 연관성
손배	서울민사지법 1983.9.30. 83카합2449판결	대성교회, 빅윤식	탁명환	인용	본안전판단사래
손배	서울민사지법 1986.12.24. 86카합3104판결	진부자와3	중앙일보	인용	가명사용
손배	서울민사지법 1990.11.9. 90카합15032판결	김영희	김세애나외2	인용	직접언급없이나면언급
손배	서울고법 1991.9.25. 91나27329판결 서울민사지법부지원 1991.5.7. 90카합10957판결	신현수의5(가족)	국민일보외1	인용	가족피해인정
손배	대법원 1994.5.10.93다36622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6.11. 92나56013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10.15. 92카합58180판결	조윤환	한국일보	인용	성명명시알아도 표현내 용주위사정종합, 특정
손배	서울지법남부지원 1995.8.3.94카합14378판결	비상락(기자)	KBS, 조규전	인용	S신문사 맥심O기자 특정
손배	대법원 1998.9.4. 96다11327판결 서울고법 1996.2.2. 95나25819판결 인천지법 1995.6.13. 94카합16812판결	정규자	정성후(PD) MBC	인용	음성변조없음, 특정 (1심은 기자함)
손배	서울지법 1996.5.14.94카합91515판결	오영나외14	조선일보외1	인용	서울내86회편, 특정
손배	서울고법 1998.4.16. 97나47141판결 서울지법 1997.9.3. 96카합82966판결	정OO(방송사앵커)	MBC외3인	인용	모자이크,변조했으나 지막 등, 특정인정
손배	서울지법 1998.8.19. 97카합93499판결	경실련외4단체	한국는단외1인	인용	비법인사단=피해자적격
손배	서울지법 1998.11.25. 97카합70274판결, 97카합70281판결(병합)	민변외8단체	한국는단외2인	인용	비법인사단=피해자적격
손배	서울지법 1999.6.23. 99카합14391판결	최윤식(검사)	KBS외 4인	인용	주위사정으로 특정인정

손배	서울고법 2000.8.24. 99나11986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1.28.98가합11581판결	법관용	한겨레외2인	기각	한나라당 11 의원=특정 1심은 인용
손배	대법원 2000.5.12. 2000다5510판결 서울고법 1999.12.23. 99나13432판결 서울지법 1999.2.3. 98가합58307판결	배태연(변호사)	KBS, 조선일보	인용	배도변호사, P변호사=특 정함
손배	서울지법 2000.7.12. 99가합90005판결	황창근외4인(군판사들)	경향신문외5인	인용	직접거명없으나 특정인정
손배	서울지법 2000.10.11. 99가합109817판결	함성욱	대한매일외3인	인용	B씨, 등숙지진=특정
손배	서울지법 2000.10.11. 2000가합4673판결	자유호(법원사무관)	박진표외1인	인용	모자이크, 음성불변조=특 정
손배	서울지법 2000.10.18. 99가합95970판결	조창희외4인 (기무사장교들)	SBS	인용	기무사A,B,C장군=특정
손배	서울고법 2002.8.22. 2001나166293판결 서울지법 2001.10.10. 2001가합1961판결	조창희외3인	KBS,대한민국	인용	원고보도로'가족'피해 인정
손배	서울지법 2003.4.4. 2001가합58950판결	김OO(검사)	문화일보외1인	인용	사건의주임검사=특정
손배	서울지법 2003.10.15. 2001가합68728판결	박OO외10인(광주검사들)	독립신문사외	인용	검사검단성원특정인정
손배	서울지법 2003.10.29. 2000가합98920판결	권노삼외2인	동아일보외4인	인용	민주당K의원, 특정
손배	대전고법 2004.6.17. 2003나17034판결 경주지법 2003.8.22. 2001가합2034판결	OOO외19인 (OO지방경찰청 소속형사들)	MBC외1인	인용	개인보도넘어 OO지방경 찰청기동수사대전체특정 인정
손배	서울중앙지법 2004.5.27. 2003가합35432판결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원	조선일보	인용	분양전판단, 비법인사단
손배	서울중앙지법 2004.9.15. 2004가합32294판결	새문안교회외1인	한겨레외1인	인용	교회의비법인사단인정
손배	대법원 2005.1.14. 2001다28619판결 서울고법 2001.4.19. 2000나19859판결 서울지법 2000.2.2. 99가합77460판결	이후규외11인(검사들)	조선일보외1인	기각	'검찰' = 검찰특별수사본 부소속 원고들 특정 1,2심은 인용함

4. 분석결과의 논의

1) 분석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 즉, 익명·이니셜로 처리하거나 모자이크·음성변조해서 방송한 경우에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어떤 범위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 인정 혹은 부정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성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거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음성을 변조해 보도하였더라도 당사자적격, 즉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더라도 자막을 통해 신원을 공표하거나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보도가 당사자를 특정함으로써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특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

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본다.¹⁶⁾ 따라서 방송에 의한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 밖에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수준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를 종합해서¹⁷⁾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부자 사건에서 법원은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 이라면 능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¹⁸⁾ 김영희 대 김세레나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남편에 대한 언급을 통해 부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즉,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 기사가 월간지에 게재되어 독자들에게 널리 공표됨으로 인하여 000의 처인 원고뿐만 아니라 000와 원고가 부부인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000의 처로서의 원고의 부부 생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침해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¹⁹⁾ 또 조윤환 대 한국일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000의 장인, O모 양의 친정 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원고의 딸에 대하여도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O모 양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기사에 원고의 딸과 혼인신고

16) 대법원 1982.11.9. 82도1256판결

17) 서울지법 1999.6.23. 99가합14391판결

18) 서울고법 1987.3.18. 86나4096판결

19) 서울민사지법 1990.11.9. 90가합15032판결

를 한 상대방의 성명, 그 혼인신고지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혼한 후 새로 결혼을 하였고, 원고가 살던 마을 이름 등 원고의 생활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원고의 딸이 가출한 경위, 그 이후의 생활상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기사에서 말하는 000 장인 또는 O모양의 친정아버지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²⁰⁾

그 외에 K교수 혹은 방송인 C씨라고 표기한 경우,²¹⁾ 26세의 중견모델 진모양이라고 기사화 한 경우,²²⁾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자막을 통해 표시한 경우,²³⁾ 배모 변호사 혹은 P변호사라고 표기한 경우,²⁴⁾ B씨라고 표기했으나 해당 내용을 통해 특징이 인정된 경우,²⁵⁾ 한나라당 N 의원으로 표기한 경우,²⁶⁾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경우²⁷⁾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서 보도와 원고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였다(<표 2> 참조).

나아가 해당 언론보도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서울모대학 정모교수’라고 했으나 다른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특정되었다고 인정한 사례,²⁸⁾ 당해 방송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한 경우에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우,²⁹⁾ 해당 신문에는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일간신문들에 그 명단이 보도됨으로써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사건 기사와 개별적

20) 대법원 1994.5.10. 93다36622판결

21) 서울민사지법 1990.7.19. 90카41568판결. 김우룡·차인태 대 한국기자협회 사건.

22) 서울민사지법 1994.10.27. 94카기3509판결. 진회경 대 현대문화신문 사건.

23) 서울고법 1998.4.16. 97나47141판결. 방송사 앵커인 정OO 대 MBC외 사건.

24) 대법원 2000.5.12. 2000다5510판결. 변호사인 배태연 대 KBS·조선일보 사건.

25) 서울지법 2000.10.11. 99가합109817판결. 함성욱 대 대한매일의 사건.

26) 서울고법 2000.8.24. 99나11986판결. 박관용 대 한겨레의 사건.

27) 서울지법 2000.10.11. 2000가합4673판결. 지용호 대 박진표의 사건.

28) 대법원 1996.12.23. 95다37278판결.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대 KBS 사건.

29)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2.13. 2002카합2549판결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³⁰⁾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정책광고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면서 광고문에서 지명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광고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³¹⁾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타인의 견해를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학술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그 일부 내용을 이미 자신이 밝힌바 있다는 반론을 구한 경우에 개별적 관련성을 부인하였고³²⁾ 김경애의 초상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광고의 그림이 원고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³³⁾ 은진송씨 송자각하중천회 사건³⁴⁾과 학교법인 청강학원 사건³⁵⁾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사건³⁶⁾ 등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면서 반론보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0) 서울지법 1996.1.25. 95카기5816결정

31) 서울민사지법 1992.9.15. 92카기474판결

32) 서울민사지법 1982.10.21. 81카36289판결

33) 서울민사지법 1988.5.11. 87가합6175판결

34) 대법원 2000.2.25. 99다12840판결

35) 서울지법서부지원 2001.10.11. 2001카합518판결. 이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신청인의 설립자·이사장 등 개인들에 대한 기사로 보여 질 뿐이고 이 기사내용만으로는 위 개인들과는 별개의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신청인과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설립자, 이사장 등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반론을 제기할 이익을 인정할 간접적 연관성도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기사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은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6) 대법원 2003.2.11. 2002다47914판결. 신청인이 보도내용 중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기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고 개별적 연관성 여부에서도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43개 업체 모두가 피해를 입은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과 신청인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문제는 기관·단체·집단에 대한 보도로 인해 그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가, 즉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보도로 인해 기관·단체·집단이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들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입장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능력 혹은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경우는 물론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타인의 어떠한 표현으로 인하여 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예·신용 등을 침해당하였다면 명예의 주체가 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완전히 갖추기 전의 명예 등 침해행위와 관련해서도 그 침해행위가 비법인사단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판단하면서 원고가 동교회에 불과하다거나 실령 비법인사단으로서 요건을 구비했다라도 그 성립 이전의 보도에 대해서까지 그 구성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을 물리치고 있다.³⁷⁾ 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성에 대해서는 경실련의 대 한국노동단 사건,³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 한국노동단 사건,³⁹⁾ 새문안교회 대 한겨레신문 사건⁴⁰⁾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법원은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민사소송법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서울 시내 신림중앙교회 등 11개 교회의 담임

37) 서울중앙지법 2004.5.27. 2003가합35432판결

38) 서울지법 1998.8.19. 97가합93499판결

39) 서울지법 1998.11.25. 97가합70724, 97가합70281판결(병합)

40) 서울중앙지법 2004.9.15. 2004가합32294판결

목사 등이 조직한 종교단체로서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가 하나의 단일한 사회적 활동개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⁴¹⁾ 또 법원은 ‘비법인사단이란 계속성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과 대표자 및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 등이 사단 규약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목적으로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이유 있다고 할 것이나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에 비취볼 때, 그리고 신청인 위원회가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다.⁴²⁾⁴³⁾

그렇다면 이 연구문제의 첫 번째 측면, 즉, 특정 집단을 언급하거나 특정 집단 소속 구성원 일부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구성원들에게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가?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별적 연관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거나 특정집단의 규모가 소수일 때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보도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

41) 서울민사지법 1983.11.25. 83카22003판결

42) 서울민사지법 1992.11.26. 92카기649판결

43) 그러나 한국기자협회 충청도지부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면서 신청을 기각하였다(청주지법 1990.7.21. 90카1874결정). 이 판례에 대해 양경승은 ‘회사나 관청의 국, 과 등과 같은 단순한 소속기관 내지는 보조기관에 그치지 않고 정부관서 중 각 부처나 경찰서, 우체국, 읍·면·동 사무소(현행 지방자치법상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등과 같은 행정기관, 각종 협회나 사단의 지부 등과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라면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판례의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양경승, 1996). 이 사례를 제외하면 언론소송에서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적격은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라고 실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 구체적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⁴⁾

이에 비춰볼 때, "1999년 6월 17일 기준으로, 검사의 현 인원이 1,151명이 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25명,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현 인원은 6명인 바, 이러한 집단의 크기, 그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 등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들' 또는 '검사'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한달 여에 걸친 관련 방송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인 대전지역 검사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중 일부인 원고 최OO, 원고 이OO, 원고 정OO, 원고 김OO은 '대전지역 검사들'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 각각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⁵⁾

또, 법원은 " '호남지역 검찰', '호남 검사',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검사', '호남출신 검사', '간부 검사' 등의 표현으로 인해 해당 시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들 또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 검사들이 지칭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집단명예훼손의 법리에 비춰볼 때 해당 시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또는 부부장검사로 근무하였던 검사인 원고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⁴⁶⁾ 그리고 서울지

44) 서울지법 2003.10.15. 2001가합68728판결

45)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6.22. 99가합5683판결

46) 서울지법 2003.10.15. 2001가합68728판결

검 형사4부 소속 검사 사건에서 법원은 이름이 거론된 부장 및 부부장검사 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보도내용이 공익보도이고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형사4부 소속 검사들은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지검 형사4부’, ‘검찰’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기사가 형사4부 소속 검사 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⁴⁷⁾

나아가 오영나의 14인이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대 86학번 여학생이라는 표현과 보도내용이 원고들을 특정하였다고 판단하였고,⁴⁸⁾ 조창현의 4인이 SBS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비록 A장군, B장군, C장군 등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기무사 소속 장군 숫자에 견줘 볼 때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⁴⁹⁾ 그 외 강남구청위생과 소속 직원 사건,⁵⁰⁾ OO지방경찰청소속형사 사건,⁵¹⁾ 이훈규의 11인 검사 대 조선일보 사건⁵²⁾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용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두 번째 측면은 구성원에 대한 보도와 소속 기관·단체·집단의 개별적 연관성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인정한 사례도 발견된다. 즉, 노회장 개인에 관한 기사는 소속 노회에 대한 피해와 관련이 없다면서 개별적 연관성을 부정하였고,⁵³⁾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사건에서도 구성원에 대한 보도가 단체의 피해와는 관련이

47) 서울고등법원 2002.2.7. 2000나31320판결

48) 서울지법 1996.5.14.94가합91515판결

49) 서울지법 2000.10.18. 99가합95970판결

50)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10.25. 2001카합1414판결

51) 대전고법 2004.6.17. 2003나7034판결; 청주지법 2003.8.22. 2001가합2034판결

52) 대법원 2005.1.14. 2001다28619판결; 서울고법 2001.4.19. 2000나9859판결; 서울지법 2000.2.2. 99가합77460판결

53) 서울민사지법 1984.11.30. 84카35089판결

없다고 판단하였다.⁵⁴⁾ 또 교회 구성원에 대한 보도는 교회와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었다. 즉, 어떤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는 것이다.⁵⁵⁾ 정당대표에 대한 보도는 정당과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기사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고, 선거 시기에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게 마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던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정당이 법률상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정당의 직무집행과도 무관한 대표자 개인에 관한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해 신청인 정당의 이미지가 사실상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지 신청인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 정당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⁵⁶⁾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가 중앙일보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도 대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한 번 명기한 것은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⁵⁷⁾ 부안군 대 KBS 사건에서 법원은 보도내용이 부안군의 대표자 개인인 신청인 강수원이 마치 스스로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뉘앙스

54) 서울지법 1995.7.5. 95카기1885 결정

55) 서울지법 1996.1.8. 95카기5440 결정

56) 서울지법 1996.5.27. 96카기2195 결정

57) ‘파스퇴르 최사장 고태지르며 샷대질 증언’이라는 제하에 파스퇴르우유의 (주)성진낙농 대표인 최명재씨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에게 고태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기사 내용 중에 신청인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를 가리키는 ‘파스퇴르’라는 말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신청인 회사와 (주)성진낙농의 대표이사인 최명재씨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질 뿐 위 기사내용만으로 동기사와 신청인 회사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서울민사지법 1989.8.18. 88카62228판결).

를 풍기는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신청인 부안군의 직무집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신청인 부안군이 법률상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 관한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해 신청인 부안군의 이미지가 사실상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은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지 신청인 부안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방송보도와 신청인 부안군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⁵⁸⁾ 또 대한 의사협회 대 KBS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피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구성원들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⁵⁹⁾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가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담임목사의 설교는 당해 교회의 주된 종교행사인 주일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담임 목사의 면면과 설교 등이 당해 교회의 인상,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교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⁶⁰⁾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법원은 국가기관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해 해당 국가기관이 관련법 상의 ‘기관’에 해당한다면서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대통령비서실 등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사건에서 법원은 구 방송법 제91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정부조직법 제38조 등에 견줘볼 때 정보통신부는 방송법에 규정한 ‘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⁶¹⁾ 또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청구

58) 서울지법남부지원 1997.10.30. 97카합3509판결

59)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10.25. 서고 2001카합1884판결

60) 서울중앙지법 2004.9.15. 2004가합32294판결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국정홍보처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간법 제16조 제7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의 규정의 취지, 정부조직법 제24조 2 제1항 등을 들어 국정홍보처가 정간법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국정홍보처와 관련 보도 내용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정부’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행정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또한 별개의 사회적 개체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 국정홍보처가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여 스스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내용과 국정홍보처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면서 청구를 기각하였다.⁶²⁾ 대통령비서실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관청도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될 수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와대비서실은 그 업무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⁶³⁾

또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은 언제라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청와대 브리핑 등을 통해 반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인인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 등의 경로를 통해 사실상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적법한 권리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상실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⁶⁴⁾⁶⁵⁾

61)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3.2.13. 2003카합14판결

62) 서울지법 2001.9.28. 2001카기10823판결

63) 서울지법 2003.12.5. 2003카기8206판결

64) 서울중앙지법 2004.8.27. 2004카기3019판결

65)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이 원고가 된 사례로는 철도청의 고속철도 운행

2) 소결론

연구결과, 우리 법원은 당사자적격의 문제, 혹은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이니셜로 보도하거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신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보도내용, 전후맥락, 자막, 음성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추지할 수 있거나, 혹은 피해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보도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때,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당해 신문이나 방송에서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타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도 특정을 인정하고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한 판례도 생산되었다.

둘째, 자연인은 물론 법인, 비법인사단, 기관·단체의 당사자능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개별적 연관성, 즉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비법인사단의 경우, 비법인사단에 이르기전이라고 해도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에 대한 보도와 단체·기관의 개별적 연관성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구성원(들)에 대한 보도로 인해 기관·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집단·기관·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보도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집단표시에 의한 언론피해에 대하여 법원은 대체로 직접 성명이 언급되거나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 특정되었다고 보고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원고 대한민국(철도청)은 한국일보가 2004년 2월 21일 A4면에 ‘고속철 4월 전면 운행은 무리’제하의 기사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총선에 대비하여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르면서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적시된 사실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4.10.15. 2004가합20130판결).

셋째, 국가기관의 언론소송 당사자적격을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개별적 연관성은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에 한정하고 있어서 국정홍보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홍보처는 다른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한국의 언론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상당히 완화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특유의 언론중재제도, 반론보도청구제도를 통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쟁점에 대한 대립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관련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경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대신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 등 언론보도의 위법성조각을 중심으로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본안전 판단에서 당사자적격을 판단한 경우는 분석 사례 중 2건에 불과하였고 대신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면책하는 법리를 적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언론의 자유,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응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5. 결론

현재 한국의 언론소송에서는 공적인 인물,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면책의 범위를 넓히는 판결이 잇따라 생산되고 있으나,⁶⁶⁾ 일반 사인에 대한 비리의혹이나 범죄사실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매체의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적 인물이 아닌

66) 이를테면, 대법원 2002.12.24. 2000다14613판결; 2003.7.8. 2002다64384판결; 2003.7.22. 2002다62494판결; 2003.9.2. 2002다63558판결; 대법원 2005.1.14. 2001다218619판결; 대법원 2005.5.27. 2004다69291판결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⁶⁷⁾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공적사안에 보도대상자의 신원공개 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사인에 대한 익명보도의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내용의 공공성 여부와 보도대상의 공적 지위 여부를 기준으로 언론의 면책범위를 결정하는 법원의 최근 법리는 인격권과 언론자유 간의 이익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리에 비취보건대 헌법·행정법 등의 분야에서 확대돼 온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언론소송에 있어서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당사자적격을 확대하더라도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의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당사자적격의 확대는 언론피해의 구제 및 공정한 여론 조성에 복무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적존재에 대한 면책범위의 확대와 사적인물의 사적사안에 대한 익명보도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최근 법원의 법리와의 배치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 법원은 자연인·법인은 물론, 비법인사단, 기관·단체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비법인사단에 이르기전이라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등, 대체로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이니셜에 의한 보도, 모자이크·음성변조에 의한 보도라 할지라도 보도내용의 맥락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 역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언론소송의 취지는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위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정보도·반론보도처럼 보도과정에서 누락된 진실한 정보나 반대 의견을 동일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여론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이들 기관의 반론·정정보도 청구의 폭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언론은 부단히 정부·정치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하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이들의 의견이 반론이나 정정의 형태로

67) 대법원 1998.7.14. 97다17257판결; 대법원 1999.1.26. 97다10215,10222판결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언론매체가 익명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매체에 신원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피해의 구제를 인용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을 과잉 해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언론활동의 위축을 막고 인격권과 언론자유간의 이익조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과잉 해석은 억제되어야 한다. 한편, 언론은 사인의 사적사안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어설픈 익명처리나 모자이크처리를 지양 경계하고 확실하게 보도대상의 신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당사자적격의 확대법리 및 최근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이 언론소송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공적사안에 관한 진실보도에 치중함과 동시에 사인에 관한 보도의 익명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 본다.

Ⅰ 참고문헌

- 곽상진 (1981). 미국 헌법소송상의 당사자적격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9집, 179-214.
- 권영성 (2005).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엘림·이석선 (1982). 판례를 통해 본 당사자적격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10권.
- 김옥조 (2005). 『미디어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용진 (2001). 당사자적격자와 소송대리인의 권한.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2001년 9월.
- 김재협 외 (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서울: 나남.
- 김종서 (1998).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98 여름호, 제67호, 18-23.
- 김철수 (2004).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 김형남 (1999).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1권 제1호, 321-334.

- 김홍엽 (1991). 미국헌법소송상 STANDING법리.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2집.
- 명재진 (2002). 헌법적극주의.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13집, 345-378.
- 문재완 (2005). 언론중재법의 개정방향.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 박경 (1996a). 순수당사자적격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미국판례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대학원 연구논집』, 제24권, 29-51.
- _____ (1996b). 『헌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확대이론의 연구: 미국판례법상 Standing 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민영 (1997). 미국 행정법상 당사자 적격에 관한 평가. 『법학연구』, 제8권 제1호, 301-334
- 박용상 (2005).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이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 배병일 (1992). 초상권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9권 제1호, 113-131.
- 성낙인 (2001). 『헌법학』. 서울: 법문사.
- 신평 (2002). 『헌법적 관점에서 본 명예훼손 연구: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공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양경승 (1996).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제16권 제4호, 27-78.
- 양장수 (2005). 명예훼손의 법문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언론중재』, 제25권 제1호, 통권94호, 54-65.
- 언론자유위원회 (1947).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김택환 역 (2001).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서울: 중앙M&B.
- 오대성 (1995).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1·12호,
- 유일상 (2003). 반론권 제도와 그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 유재웅 (2003).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여름, 통권 21호, 147-175.
- 윤경 (2003).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제23권 제4호, 통권89호, 80-85.
- 윤용석 (1996). 언론의 민사책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13권 제1호, 1-16.
- 이광필 (1984).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론집』, 제12집, 185-200.

- 이동률 (2004). 당사자적격의 이론적 발전과정.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47-261.
- 이승선 (2005a).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권 제1호, 227-262.
- _____ (2005b). 광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제7권 제5호, 177-210.
- _____ (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3호, 293-334.
- 이재석 (1998). 언론과오와 인격권의 침해.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5권 제2호, 455-508.
- 장호순 (2004). 『언론의 자유와 책임』. 서울: 한울.
- 조재현 (2005).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조준원 (200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 『방송문화』, 제254호, 2002.8월호, 46-49.
- _____ (2003).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적 쟁점과 판결 경향. KBS방송문화연구소, 『방송문화연구』, 제15권 제1호, 251-282.
- 최문기 (1999).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에 관한 소고. 성균관대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1권 제1호, 127-167.
- 표성수 (1997). 『언론과 명예훼손』. 서울: 육법사.
- 표호건 (1997). 비법인의 당사자능력. 『사법행정』, 443호, 1997년 11월, 18-28.
- 한국프로듀서연합회 (2000).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서울: 한울.
- 한수용 (2002). 헌법상의 인격권: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13집, 623-674.
- 한위수 (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비교법적 일고찰: ‘현실적 악의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한국언론재단 공동주최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 _____ (2004).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제24권 제1호.
- 한인섭 (1999). 비판법학. 미국학연구소 (편),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 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37-174.
- 한종렬 (1993). 당사자적격.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1993년 3월호.

- 함석천 (2005).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제25권 제1호, 42-53.
- _____ (2001a).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 제21권 제2호, 통권79호, 61-81.
- _____ (2001b).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 제21권 제3호, 통권80호, 55-74.
- 허영 (2005).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홍완식 (1999). 음성권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8권 제1호, 115-129.
- 황도수 (199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자기관련성’의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2집.
- Bunker, Matthew D. & David K. Perry (2004). Standing at the Crossroads: Social Science, Human Agency and Free Speech Law.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9(1), 1-23.
- Cohen, M.L. & K.C.Olson (1992). *Legal Research*. St.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 Gallant, S. & Epworth, J. (2001). *Media Law: A Practical Guide to Managing Publication Risks*. London: Sweet & Maxwell.
- Keane, John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Cambridge, MA: Polity Press.
- Kerimov, D. (1989). *Methodology of Law*. Moscow: Progress Publishers.
- Middleton, K.R., William E. Lee & Bill F. Chamberlin (2005). *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Overbeck, Wayne (2004).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Stovall, J. G. (2005). *Journalism*. Pearson Education, Inc.
- Zelezny, John D. (2004). *Communications Law*.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A Study on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Suit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Seung-Su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and PR, Mokwon University

Standing to 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s in suits between the press and the victims injured by the press reports. Even though Korean law was patterned after the European legal system,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judicial system was also influenced by its counterpart in the United States. The doctrine of standing to sue has plagued the U.S. Supreme Court for several decades. The traditional test of standing in the federal courts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whether the interest asserted by the plaintiff amounted to a 'legal right',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law.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settled on a two-tiered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a plaintiff has standing to sue in federal court. The first level of inquiry is the constitutional core, and the second is the judicially imposed prudential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legal proceeding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The press needs to internally transform as well to prevent legal dispute, enforcing confirmation when collecting news materials and building up the device for pre-examining the news. The press is also requested to help sincerely the victim recover, realizing that they waste their reputation and credit not to mention a lot of time and money during the legal dispute.

Keywords: standing, libel, press arbitration, press report, public figure